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 8. 31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1. 8. 3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1. 9.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장 권진해)

□ 제안이유

○ 도시공원·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천시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여 공원운영관리 및 녹지의 점용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원점용허가는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과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으로 함(안 제14조)

○ 녹지점용허가는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종복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녹지로 함(안 제14조의2)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규제개혁이 완화되는 것인가	○ 완화되는 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99년 4월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기도 지침에 의거 개정요구된 사항이나 2년여가 지난 뒤에 시행하는 것은 집행부가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차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도시공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7호
의결년월일	제90회 (2001. 9. 8)

제출년월일 : 2001. 8. 31

제출자 : 부천시장

 제안이유

- 도시공원·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천시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여 공원 운영관리 및 녹지의 점용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 공원점용허가는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과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으로 함(안 제14조)
- 녹지점용허가는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종복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녹지로 함(안 제14조의2)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관련 법령 발췌서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
- 도시공원법 제8조, 제12조의2
- 도시공원법시행령 제5조, 제6조
-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공원점용허가)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전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6조제1항제8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동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자의 온실의 목적일 것
 -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의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6조제1항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 가. 하나의 공원을 2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 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 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 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쇠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배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을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 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녹지점용 허가) ①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녹지
- ② 시장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접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 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한 것
-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시계획법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접용허가할 것
-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 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자동차 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접용허가할 것
-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접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 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접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접용허가할 것

3.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③제2항의 접용허가는 제14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접용허가의 기간) ①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접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접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공원 또는 녹지접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접용허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용허가연장 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점용물의 관리) ①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경계축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 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3조(용어의 정의) 영 제6조제2항제11의2호에 규정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과 "종교용 시설"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p> <p>2. "종교용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 등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하는 시설로서 건축물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체,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재실 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 등 공작물을 말한다.</p>	<p><u>(삭제)</u></p>
<p><u>제14조(접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① 시장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접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하다.</u></p> <p><u>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u></p>	<p><u>제14조(공원접용허가)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원 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p>

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2.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6조제1항제8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동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의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6조제1항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또는 대수선

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써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다른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님 것(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탁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 것

5.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쇠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의2호에 규정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그 입지가 당해 공

원의 성격, 기능,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않도록 점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시 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신설)

제14조의2(녹지점용 허가)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 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녹지

②시장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 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시계획법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 도로변의 녹

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 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3.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3)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14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p><u>제15조(점용허가의 기준)</u> 시장은 공원 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u>1.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u></p> <p><u>2. 영 제6조제1항제11호의2호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u></p> <p>가. 신규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삼·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p> <p>나. 기존의 단일 건축물로 2 이상의 건축물을로 분할하는 경우</p> <p>다. 증축 후 총수가 3층 초과시와 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녹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라. 건축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기 조성된 동일 대지 내에서의 경미한 위치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p> <p>마. 삭제</p> <p>바. 오·폐수 및 배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p> <p>사.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p> <p><u>제16조(점용허가의 기간)</u> ①공원 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 등에 따라 정한다.</p> <p>②녹지 점용허가의 기간은 대상시설의 종류, 녹지의 활용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p>	<p>(삭제)</p> <p><u>제16조(점용허가의 기간)</u> ①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p> <p>②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p>
---	---

제17조(점용률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대로 이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첨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 전 경계측량 피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에 대한 공원점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점용률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공원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 허가기간, 면적, 점용률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